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,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정주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군 계획시설 중 전시시설, 국제회의시설 결정기준 마련(안 제10조의2)

나.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(제19조의3, 안 별표 27)

-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창고시설을 완화대상에서 제외

다.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(제19조의4, 안 별표 28)

- 도로와의 이격거리 신설(500미터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설치 시 완화 기준 마련

※ 특정건축물 : 자원순환관련시설(나목부터 마목까지만 해당한다) 및 제26호 묘지관련시설(라목만 해당한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규제심사 : 원안가결[기획감사실-7741(2019.8.2.)]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[가족지원과-30312(2019.7.26.)]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예고기간 : '19. 8. 8. ~ 8. 28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군 계획시설 중 전시시설, 국제회의실의 결정기준을 신설하고,

○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(별표 27 제3호 나목)을 신설하여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과 창고시설을 완화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였으며,

○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묘지 관련 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우 도로법 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2차선 이상 포장된 도로와의 이격거리 500미터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방지와 정주환경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